

- 2025년 세종 SW융합클러스터2.0(특화산업 강화) -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사업화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특화산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내 ICT/SW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04.

세종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상용화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사업화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 SW융합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新비즈니스 발굴 및 국내 유망 ICT/SW기업 육성
- 디지털 콘텐츠 분야 SW융합 제품 서비스의 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과제수
상용화	2025.5.~2025.11(7개월)	최대 100,000천원	4개 내외
사업화	2025.5.~2025.10(6개월)	최대 30,000천원	5개 내외

○ (지원자격)

- 세종지역 소재 디지털 콘텐츠(별첨 1 참조) 관련 기업
 - ※ 기업별 디지털 콘텐츠 분야 KSIC 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해당 기업
 -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본사, 지사, 연구소 등) 확인 필수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분야	
- (산업명)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콘텐츠 정의)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	
- (산업범위) ①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②AI 기반 라이프콘텐츠, ③산업콘텐츠(실감·XR·디지털트윈), ④융합웹툰	
- (산업기술) 메타버스, AI, IoT, MR/XR, AR/VR, 오감미디어콘텐츠, 홀로그래픽콘텐츠, 웹기반 콘텐츠 플랫폼, 게임, 현실가상융합콘텐츠, 암호화 기법 등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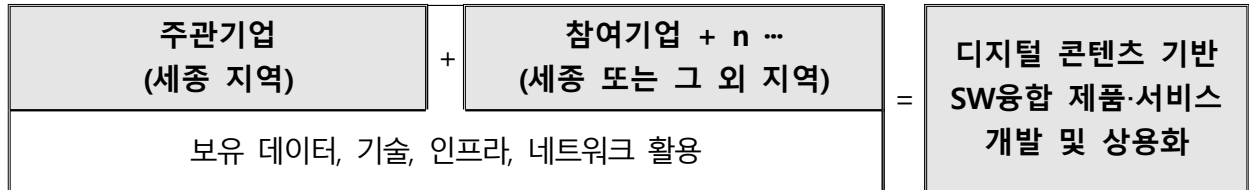
2차 모집 공고	'25.4.17(목)~4.24(목)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사업계획서 신청 ※상용화, 사업화 구분	~'25. 4. 24(목)	신청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 SEMS 시스템 접수(18:00까지)
↓		
(1단계) 적합성 검토	'25. 4. 25(금)	세종테크노파크
↓		
(2단계) 서류 및 발표평가	'25. 4. 28(월)~ 4. 30(수) 예정	(상용화 사업) 발표평가 (사업화 사업) 서류평가
↓		
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	'25. 5월 초	세종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사업수행	협약일~	(상용화 사업) ~'25. 11. (사업화 사업) ~'25. 10.
↓		
최종 결과평가	'25. 하반기	(상용화 사업) ~'25. 12. (사업화 사업) ~'25. 11.
↓		
사업비 정산 ※상용화 사업만 해당	'25. 12월~'26. 1월	위탁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별도 지정
↓		
성과 관리	요청 시	지원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성과 등 실적 제출)

※ 상기 일정은 세종테크노파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과제 지원
- 세종시 및 관내·외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 확장 및 신시장 창출 조성



○ (지원규모) 총 4개 과제 내외(과제당 1.0억원 X 1년)

- 지원과제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W융합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화** 지원
- 지원기간 : 2025. 5. ~ 2025. 11.(7개월)

○ (지원금 편성방법) 총 사업비의 민간부담금 25% 이상 의무 매칭

-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총 사업비의 75% 이하)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
- * 민간부담금 25% 중 현금비율 10% 이상 의무 편성, 현물은 인건비만 편성 가능

(예시)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75%)	민간부담금(25%)	
		현금(30%)	현물(70%)
133,335	100,000	10,000	23,335

○ (지원조건) 협약기간 내 제품 개발, 기능 개선, 신시장·서비스창출 등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매출 실적 필수)

○ (지원자격)

- 세종지역 소재 디지털 콘텐츠(별첨 1 참조) 관련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필수 참여(참여기업은 지역제한 없음)

▶ 본 사업은 지역 기업의 제품 상용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주관기업 예산 비중 50% 이상 필수)

- 참여기관 수는 최대 2개까지 구성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세종지역 내 위치 해야 함

(본사, 지사, 연구소 등 과제 선정시, 과제수행 종료 후 2년간 세종시 유지)

※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내 디지털 콘텐츠 분야 업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도 지원가능하나, 신청시 입주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선정될 시, 세종시로 이전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지원제외 대상) 아래 내용 해당 시 지원 불가(주관/참여기관 공통)

-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중복성 검토 및 제재정보 확인 필요
 - 일부 중복 내용일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원가능
 - ▶ 접수일 기준 각종 보고서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업)
 -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가결산 포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선정된 경우, 발견 즉시 신청·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조치

○ (평가절차 및 기준)

(1단계) 적합성 검토 (점검자: 세종테크노파크)
- 제출서류, 지원자격, 지원제외 대상, 경영상태, 중복성 검토, 우대사항 등 확인 ※ 필요시 서류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장 점검 수행 및 본사가 세종지역에 위치한 경우, 2단계 평가시 가점 부여



(2단계) 발표평가 (평가자: 외부 평가위원)
- 평가일정 : 2025. 4. 28(월) ~ 4. 30(수) 예정 ※ 세부일정은 차후 안내
- 평가방법 : 발표평가(기업당 30분씩/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 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점)
타당성 (35점)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 제품개발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명확성·실현가능성	20
		- 지역 특화산업(디지털 콘텐츠)와의 연관성	15
기술성 (15점)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 기업 안정성(재무, 인력 등) 및 보유기술·제품 수준	5
		- 개발기술·제품(서비스)의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	5
		-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연계성	5
		- 총괄책임자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조직구성 등 적절성	5
사업성 (50점)	상용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사업화 및 상용화를 통한 시장개척 가능성	20
		- 신규고용 및 매출실적·성장 가능성	20
		- 지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성장 기여 가능성	10
우대사항 (2점)	세종시 본사	- 본사가 세종지역에 위치한 경우	2
합계			102

○ (기타사항)

- 평가시 발표는 과제 주관기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함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예산 등을 심의·조정 후 최종 선정
- 선정 취소·포기 과제 발생시, 70점 이상인 차순위 과제순으로 선정
-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불인정되며,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세부 추진일정)

계획	2차 모집 공고	'25.4.17(목)~4.24(목)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접수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신청	~'25.4.27(목)	신청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 SEMS 시스템 접수(18:00 까지)
	↓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25.4.28(월)~4.30(수) 예정	세종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 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 실시
	↓		
	평가결과 발표	'25. 5월	세종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기업 개별통보 실시(공문 등)
	↓		
	협약 체결	'25. 5월	세종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협약기간 : 5월~11월(7개월)
사업 수행	↓		
	사업수행	협약일~'25. 11월	지원기업
	↓		
	사업비 지급 (1차)	'25. 5월 예정	세종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 지원금의 50% 지급 예정
	↓		
	중간 진도관리 (현장실사)	'25. 8월	세종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 실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50% 지급 예정
	↓		
최종 결과 보고 (사업비 정산 포함)	'25. 12월	지원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			
	최종 결과평가	'25. 12월	세종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실시
↓			
	사업비 정산	'25. 12월~'26. 1월	위탁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별도 지정
↓			
사후 관리	성과 관리	요청 시	지원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성과 등 실적 제출)

※ 일정 및 지원금(비율, 지급시기)은 내부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 (의무사항) 모든 실적은 협약기간 내 발생한 건만 인정

순번	내용
1	○ 개발제품 상용화 및 매출 발생 - 수행기간 내 개발제품 상용화를 통한 매출 실적 발생 필수 - 매출 실적 증빙 제출 필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제품명 명시)
2	○ 과제별 신규인력 채용 - 협약기간 중 주관기업 내 신규직원 고용 필수(기업당 2명 이상) - 인력채용 증빙 제출 필수(4대보험 가입자명부)
3	○ 규제개혁 어드바이저 활동 참여 - 세종TP에서 지원하는 규제개선 활동(컨설팅, 기술자문) 참여 필수
4	○ 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별첨 2 참조)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로 구성 - SW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는 최대 30% 이내로 구성 -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PC 및 장비 사용시 임차료로 편성하여 사용) -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위탁정산 수수료 편성 필수 * 사업비 정산은 별도 회계법인 지정 예정
5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과제 선정기업 대상 - 사업비 선지급을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기업 자부담 / 보험기간: 협약일~'26. 5. 31 까지) - 사업운영을 위한 전용계좌 신규 개설 필수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지원기업에서 납부
6	○ 사업수행 결과물 제출 ※ 과제 선정기업 대상 - 결과보고서, 실적 증빙서류, 사업비 정산서류 등 기관 요구자료 제출 필수

○ (유의사항)

순번	내용
1	- 사업 수행 중 수행계획의 변경(참여연구원, 사업비 등)이 필요한 경우 협약변경 신청 필수 ※ [변경신청] 지원기업 → [변경승인] 세종TP → [승인통보] 세종TP
2	- 사업 수행 내용(추진일정 대비 실적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현황 등) 정기 진도점검 실시
3	- 사업 수행 중 해당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최종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회계정산 시 집행금액 불인정 등 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공고게시: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지원-사업공고' (www.sjtp.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4. 17.(목) ~ 4. 24(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SEMS(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통한 제출
 ※ 공고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완료 과제만 인정.

홈페이지 (www.sjtp.or.kr) ➡ SEMS '바로가기' (우측 상단) ➡ 회원 가입 ➡ '공고&접수' 메뉴(세종TP 지원사업) ➡ 사업공고 제출서류 제출 ➡ 접수 완료

○ (제출서류) 서류 날인 스캔본 및 문서 원본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대상	부수	비고
신청시	1 - 사업계획서	필수	주관	1부	붙임1
	2 - 수행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붙임2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붙임3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주관, 참여	1부	붙임4
	5 - 기업 정보 현황	필수	주관, 참여	1부	붙임5
	6 -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1부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http://ntis.go.kr)의 R&D관리시스템에서 중복성 검토 결과서 출력	필수	주관	1부	-
	7 - 발표자료(PPT 또는 PDF)	필수	주관	1부	-
	8 - 사업자등록증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
	9 - 최근 3개년(22~24년) 재무제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
	10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해당시	주관, 참여	각 1부	-
	11 -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선정 확인서	해당시	주관, 참여	각 1부	-
선정후	12 - 현금 및 현물 출자(납입) 협약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붙임6
	13 - 신규인력 채용 협약서	필수	주관	1부	붙임7
	14 - 사업장 유지 협약서	필수	주관	1부	붙임8
	1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 제출증빙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문의처)

- ▶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 전지영 전임연구원
 - tel : 044-850-3825 - e-mail: viki2141@sjtp.or.kr
- ▶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 엄지혜 연구원
 - tel : 044-850-3839 - e-mail: ejh2024@sjtp.or.kr

3 SW융합 제품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디지털 콘텐츠 분야 SW융합 제품 서비스의 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총 5개 과제 내외(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과제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W융합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 지원기간 : 2025. 5. ~ 2025. 10.(6개월)

○ (지원금 편성방법) 총 사업비의 민간부담금 10% 이상 현금 부담

-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90%) + 민간부담금(10%)
- 부가세는 기업 부담이며, 지원 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시)

(단위: 천원)

구분	총 사업비(100%)	정부지원금(90%)	민간부담금(10% ↑)
사업화 지원	33,340	30,000	3,340

※ 본 예시는 민간부담금 필수 편성액의 최소금액이며, 필요시 증액하여 편성 가능

○ (프로그램 구성)

(예시)

지원유형	프로그램별 정부지원금 예산구성	비고
단일형	• 시제품 제작(2,000만원)	프로그램별 예산 자율 구성
패키지형	• 시제품 제작(2,000만원) + 국내 전시회참가(1,000만원)... + n	

※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 각 프로그램별 지원금 **한도 내** 신청 프로그램 자율 구성

(단일 또는 국내·외 프로그램 포함 3개 이내,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자부담 10% ↑)

○ (국내 지원 프로그램)

순번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만원)
1	시제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융합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및 샘플 제작 지원 - 제품 및 서비스 설계, 개발, 제작, 시험생산 등 - 제품 디자인(3D설계, 모델링), SW설계(회로, 시스템 위험도) 등 	2,000
2	시험평가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융합 제품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 SW품질, 신뢰성, 인증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평가 - 국제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SW품질·신뢰성 인증 - GS인증, 기타인증(KC, CE, CCC, PSE, SW관련 인증 등) ※ SW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500
3	지식재산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융합 제품의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 특허 : 출원, 등록 - 기타 : 프로그램 등록, 디자인·상표(출원 및 등록) 등 ※ 협약 후 3개월 이내 특허 출원 조건부 	500
4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브로슈어,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등 제작 지원 •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BI 제작 지원 	500
5	국내 전시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비, 장치비, 참가비 등 부대비용 지원 	1,000
6	마케팅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마케팅 전략, 경영전략 수립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일반경영, 마케팅, 시장조사, IP 로드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1,000

○ (국외 지원 프로그램)

순번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만원)
1	국외 수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장 및 산업 동향 조사 비용 지원, 해외인증, 기술지원, 해외 투자유치 지원, 국외 마케팅 전략 수립 비용 지원 ※ 체재비, 항공료 지원불가 	1,000
2	국외 전시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비 및 설치비 등 지원 ※ 체재비, 항공료 지원불가 	1,000
3	국외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브로슈어, 리플렛, 팜플렛, 카탈로그, 제품 매뉴얼 등) 제작 비용 지원 	500

○ (지원자격)

- 세종지역 소재 디지털 콘텐츠(별첨1 참조) 관련 기업
- 기업별 디지털 콘텐츠 분야 KSIC 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해당 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세종지역 내 위치 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아래 내용 해당 시 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지원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세종TP 지원사업 중 부정 사용 등으로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인 경우
 - 그밖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선정된 경우, 발견 즉시 신청·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조치

○ (평가절차 및 기준)

(1단계) 적합성 검토(점검자: 세종테크노파크)

- 제출서류, 지원자격, 지원제외 대상, 경영상태, 중복성 검토, 우대사항 등 확인
- ※ 필요시 서류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장 점검 수행 및 본사가 세종지역에 위치한 경우, 2단계 평가시 가점 부여



(2단계) 서면평가(평가자: 외부 평가위원)

- 평가일정 : 2025. 4. 28(월) ~ 4. 30(수) 예정 ※ 세부일정은 차후 안내
 -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기반 **서면평가**
 -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 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35점)	- 사전 준비성 및 추진계획 명확성	20
	- 목표 달성방안의 구체성 및 지원목적 부합 여부	15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15점)	- 기업 안정성(재무, 인력 등) 및 보유기술·제품 수준	5
	- 신청내용 및 추진체계(연구책임자, 조직)의 적정성	5
	- 신청금액 편성의 적정성	5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50점)	- 사업화 및 상용화를 통한 시장개척 가능성	20
	- 신규고용 및 매출성장 가능성	20
	- 지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성장 기여 가능성	10
가점사항 (2점)	- 본사가 세종지역에 위치한 경우	2
합계		102

○ (기타사항)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예산 등을 심의 및 조정 후 최종 선정
- 선정 취소, 포기 기업 발생시, 70점 이상인 차순위 과제순으로 진행
-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미인정되며,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업비는 지원기업이 선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결과평가에 따라 지원금을 후지급함(세종TP→지원기업)
-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지원기업이 부담함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원기업에서 납부)
- 세종TP 주관 사업 수행내용(추진일정 대비 실적달성 여부 등) 중간
진도점검 실시(현장 점검 예정)
- 사업 수행 중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 및 승인 처리
이후 진행 가능 ※ [변경신청] 지원기업 → [변경승인] 세종TP → [승인통보] 세종TP
- 사업 수행 중 지원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최종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비 미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실적은 **협약기간 내** 발생한 건만 인정되며, 중간결과보고서, 발생 성과
증빙(매출, 신규인력 채용, 지적권 취득) 등 기관 요구자료 제출 필수

○ (추진일정)

계획	사업계획 공고	'25. 4월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접수 및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25. 4월	신청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 SEMS 시스템 접수
	↓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25. 4월	세종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 서면평가 실시
	↓		
	평가결과 발표	'25. 5월	세종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선정 기업 개별통보
	↓		
	협약 체결	'25. 5월	세종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협약기간 : 5월~10월(6개월)
사업 수행	↓		
	사업수행	협약일~'24.10월	지원기업
	↓		
	중간 진도관리 (현장실사)	'25. 8월 말	세종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		
	최종 결과 보고	'25. 10월	지원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		
	최종 결과평가	'25. 11월 초	세종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 서면평가 실시
	↓		
	사업비 지급	'25. 12월 중	세종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사후 관리	↓		
	성과 관리 (성과 등 실적 제출)	요청 시	지원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공고게시: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지원-사업공고' (www.sjtp.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4. 17.(목) ~ 4. 24(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SEMS(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통한 제출
※ 공고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완료 과제만 인정.

홈페이지 (www.sjtp.or.kr) ➡ SEMS '바로가기' (우측 상단) ➡ 회원 가입 ➡ '공고&접수' 메뉴(세종TP 지원사업) ➡ 사업공고 제출서류 제출 ➡ 접수 완료

○ (제출서류) 서류 날인 스캔본 및 문서 원본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목록	구분	부수	비고
1	- 사업계획서	필수	1부	붙임 1
2	- 기업부담금 납부 약속서	필수	1부	붙임 2
3	- 수행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1부	붙임 3
4	- 기업 정보 현황	필수	1부	붙임 4
5	- 신청 자격 및 과제 중복성 확인서	필수	1부	붙임 5
6	- 사업자등록증	필수	각 1부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각 1부	-
8	- 최근 3개년(22~24년) 재무제표	필수	각 1부	-
9	- 견적서(지원 프로그램별 공급업체 발행본)	필수	각 1부	-
10	- 기업 및 제품 소개서(전시회 참가 신청기업만)	해당 시	1부	붙임 6
11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1부	-
12	- 수요기업 구매약약서	해당 시	1부	-

※ 제출증빙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문 의 처)

- ▶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 전지영 전임연구원
- tel : 044-850-3825 - e-mail: viki2141@sjtp.or.kr
- ▶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 엄지혜 연구원
- tel : 044-850-3839 - e-mail: ejh2024@sjtp.or.kr

별첨 1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 KSIC 코드

○ 디지털콘텐츠 관련분야 KSIC 코드(사업계획서 내 기재 필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에 따른 업종범위 >					
1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6	26329	기타주변기기제조업
2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7	26410	유선통신장비제조업
3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38	26422	이동전화기제조업
4	33402	영상게임기제조업	39	26511	텔레비전제조업
5	59112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40	26519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6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41	26521	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7	26529	기타음향기기제조업	42	26600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8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43	27111	방사선장치제조업
9	58219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4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10	27322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45	27302	사진기, 영상기및관련장비제조업
11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46	28114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12	26421	방송장비제조업	47	28123	배전반및전자자동제어반제조업
13	85709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48	28901	전기경보및신호장치제조업
14	73909	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49	28903	교통신호장치제조업
15	62090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50	29180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16	26111	메모리용전자집적회로제조업	51	29222	디지털적층성형기계제조업
17	26112	비메모리용및기타전자집적회로제조업	52	29271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18	26121	발광다이오드제조업	53	29272	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제조업
19	26129	기타반도체소자제조업	54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20	26211	액정표시장치제조업	55	30332	자동차용신품전자장치제조업
21	26212	유기발광표시장치제조업	56	31311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22	26219	기타표시장치제조업	57	31312	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제조업
23	26221	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제조업	58	47912	전자상거래소매업
24	26222	경성인쇄회로기판제조업	59	61210	유선통신업
25	26223	연성및기타인쇄회로기판제조업	60	61220	무선및위성통신업
26	26224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61	61291	통신재판매업
27	26291	전자축전기제조업	62	61299	그외기타전기통신업
28	26292	전자저항기제조업	63	58211	유선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29	26293	전자카드제조업	64	58212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0	26294	전자코일 변성기및기타전자유도자제조업	65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31	26295	전자감지장치제조업	66	62022	컴퓨터시설관리업
32	26310	컴퓨터제조업	67	63111	자료처리업
33	26321	기억장치제조업	68	63112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34	26322	컴퓨터모니터제조업	69	63120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35	26323	컴퓨터프린터제조업	70	63999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별첨 2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본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 필요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연봉제 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r> <td>연봉제 미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body> </table> <p>*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p>	구분	세부내용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구분	세부내용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연봉제 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r> <td>연봉제 미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body> </table> <p>*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p>	구분	세부내용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구분	세부내용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일용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급전 또는 간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p><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p><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p>< 간행물 등 구입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p><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p>< 공고료 및 광고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p><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979 248 1422 472"> <thead> <tr> <th>사업비 규모</th> <th>표준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 5천만원 미만</td> <td>600천원</td> </tr> <tr> <td>•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800천원</td> </tr> <tr> <td>•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td> <td>1,000천원</td> </tr> <tr> <td>•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td> <td>1,500천원</td> </tr> <tr> <td>•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td> <td>1,600천원</td> </tr> <tr> <td>•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d> <td>1,800천원</td> </tr> <tr> <td>• 30억원 이상</td> <td>2,100천원</td> </tr> </tbody> </table> <p data-bbox="1050 488 1348 517"><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p> <table border="1" data-bbox="979 528 1422 680"> <thead> <tr> <th>참여기관 수</th> <th>가산금</th> </tr> </thead> <tbody> <tr> <td>1개</td> <td>표준수수료의 10%</td> </tr> <tr> <td>2개 이상</td> <td>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td> </tr> </tbody> </table> <ul data-bbox="979 696 1422 1059"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 30억원 이상	2,100천원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 30억원 이상	2,100천원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p data-bbox="268 1323 316 1451">공공 요금 및 제세</p>	<ul data-bbox="357 1081 903 1272"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ul data-bbox="979 1081 1422 1682"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을 참고 ○ 우편요금·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횡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p data-bbox="268 1843 316 1906">특근 매식비</p>	<ul data-bbox="357 1704 770 1765"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ul data-bbox="979 1704 1422 1928"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 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p>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p>
	일반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정보화사업」 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국내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 내 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 단가를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여비	국외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 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 달성이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